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5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전용기·조 국·민병덕

이수진 • 박지원 • 이성윤

정준호 · 이용선 · 진성준

민형배ㆍ허 영ㆍ안도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 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례와 달리 이 법 상 위력・위계의 의한 성폭행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과거 판례 중 군인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상의 조항에 따라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피감독자간음 음・추행죄 신설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 • 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법률 제 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5장에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9(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10(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2조의9(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u> <신 설></u>		제92조의10(업무상위력 등에 의
		한 추행) 하급자에 대하여 위
		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